

대경대학교 장학사정관계 운영규정

제정 2013. 3. 1. 개정 2014. 3. 1.

제1조(목적) 본 운영규정은 저소득 학생의 맞춤형 장학금 정보 제공 및 개별 학생의 상담 등을 통한 경제적 사정이 어려운 학생의 지원 등에 관한 제반 사항을 정하여 장학사정관계의 신뢰성과 공정성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구성) ① 장학사정관은 총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자로 구성한다.

② 간사는 교학처(학생팀) 팀장으로 한다. <개정 2014.3.1.>

제3조(기능) 장학사정관은 다음 각 항의 사항을 심의한다.

- ① 장학사정관계의 공정성 실현에 대한 감시 및 실사·검증
- ② 개별 학생의 상담 등을 통하여 가정형편, 성적 등 학생 맞춤형 장학금 정보 제공
- ③ 저소득 장학생 선발심사 및 장학금 지급 기준에 관한 사항
- ④ 갑작스런 가계곤란(부모 투병, 사업부도 등) 학생의 상담 및 장학금 지원
- ⑤ 기타 합의한 사항

제4조(우선순위) 저소득 학생 선발 시 다음 각 항의 해당자는 우선 선발한다.

- ① 형평성을 고려하여 소득분위에 따라 장학금 차등 지급
- ② 재직자 특별전형 입학생
- ③ 다자녀 가구(3자녀 이상) 학생 또는 기혼자
- ④ 장애우
- ⑤ 미래성장 동력 관련분야 전공 학생
- ⑥ 다문화 지식봉사 멘토링 및 다양한 봉사활동 참여자

제5조(비밀유지) 장학사정관계에서 심의한 내용 중 개별학생의 개인정보에 속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그 비밀을 유지하여야 한다.

부칙

- ① (시행일) 이 규정은 201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칙

- ① (시행일) 이 규정은 201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